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일시 2019년 2월 20일(수) 3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부 이야기 마당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패널 황상기 / 고 황유미 아버님, 반올림

이상영/ 고 이민호 아버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박민호 / 원진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이한솔 / 고 이한빛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2부 토론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강력한 기업처벌의 필요성 및 법안의 소개 / 이상윤 집행위원장

토론 종합토론

1부 이야기 마당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패널 황상기 / 고 황유미 아버님, 반올림

이상영 / 고 이민호 아버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대위

박민호 / 원진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이한솔 / 고 이한빛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황상기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망 고 황유미 아버님(반올림)

우리 유미는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유미가 병에 걸린 후에 보니, 유미와 같이 짝으로 일했던 분도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유미를 포함해서 5분이 이미 백혈병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지금은 삼성에서만 직업병 피해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150명 넘게 죽었습니다.

(삼성그룹 직업병 피해자 450명/사망자 151명, 2018년 11월 28일 기준)

그런데, 삼성은 직업병도 인정 안하고, 유해화학물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5명일 때는 5명이 전부라 그랬다가, 12명이 되면 12명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니, 가짜 피해자들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감추는 데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미가 병에 걸리고 처음에 찾아 왔던 삼성직원에게 ‘유미가 반도체 공장 화학약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으니 산재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 직원은 ‘삼성은 화학약품 쓰지도 않고, 전리방사선도 아예 없다’고 그랬다가, ‘화학약품은 있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재 인정해달라’고 하니, ‘아버님이 이 큰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제게 따졌습니다.

치료비에 들어간 돈 주겠다고 사표 쓰라고 해서 받아가놓고는, 나중에 유미 백혈병 재발해서 입원해있던 병원에 찾아와서 500만원 주면서 ‘이거 밖에 없으니, 이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돈만 있었으면 그 돈 안 받고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유미 치료비가 급해서 분하지만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듭니다.

직업병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산재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피해자들이 산재인정 받지 못하도록 늘 방해해왔습니다.

유미는 제대로 된 보호구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에 반도체 웨이퍼를 담갔다 뺏다하는 세정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공단에 보낸 유미 근무이력서에는 세정작업은 3개월만 했고, 라벨 붙이는 작업을 주로 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유미 백혈병이 문제가 되니 유미가 일했던 곳을 바꾸는 공사를 했다고 하는 말을 유미 동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삼성은 언제나 그런 유해물질 안 쓴다고만 우겼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유해환경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삼성은 유해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도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 않고 삼성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이 소송을 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판결 나오고 노동부가 보고서 공개하려고 하니,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산자부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 산재인정 막아서 삼성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산재가 적게 발생했다고 삼성이 감면받은 보험료가 일 년에 천억이 넘습니다. 치료받느라 피해자들은 살림도 거덜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산재인정 막아서 돈만 벌었지 삼성은 오랫동안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 생계비 제일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고, 산재인정 받기 전에 고통만 받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서, 반올림과 사회단체들 만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했지만, 작년에 반올림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수 백명 나와도 삼성은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벌금도 낸 게 없습니다. 직업병 외에도 화학가스 사고로 몇 번이나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삼성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불산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는데, 몇 백만원 벌금이 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백만원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살인법 반드시 만들어서 반복해서 사람이 죽는 기업들은 벌금도 세계 매기고, 처벌도 세계 해야 합니다. 특히 권한이 있는 기업책임자들을 꼭 처벌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 반올림 투쟁 경과

○ 반올림 투쟁이 시작되기까지

- 2007년 3월 6일, 故황유미(23세) 백혈병 사망.
“내 딸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아버지 황상기 씨가 언론사, 정당, 사회단체들을 만나고 다니며 호소.
- 1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함. 이후 2008년 초 대책위는 지금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으로 이름을 변경.
-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 피해자 및 작업환경 제보자 찾기, 집단 산재신청, 정부와 기업에 산재인정 책임을 촉구, 진상규명 활동, 삼성의 은폐와 거짓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피해자의 권리 찾기,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연대,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운동 등 펼치고 있음.

○ 반올림 (SHARPs) 활동

1. 연대 (Solidarity) - 반도체 자본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의 연대, 삼성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연대, 해외 반도체 산업의 피해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
2. 피해자 지원·상담 (Help) -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 산업 재해 인정 투쟁
3. 실천 (Action) - 노동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 정부와 기업의 산재 은폐에 맞선 행동, 유해화학물질 영업비밀 남용에 맞서 알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4. 연구 (Research) -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5. 홍보 (Public Relations) - 사회 이슈화를 위한 각종 언론 홍보 및 선전

○ 온라인 활동

- 반올림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영문블로그 <http://stopsamsung.wordpress.com>
- 페이스북 @sharpsglory

■ 삼성반도체 직업병 투쟁, 주요 경과

1) 삼성 직업병 피해 제보 현황 (2018. 11. 28. 현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422>

- 삼성전자 반도체/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피해자/사망자 : 317명/100명
- 삼성전자 피해자/사망자 : 364명/118명
- 삼성그룹 피해자/사망자 : 450명/151명

2) 산재 신청 및 인정 현황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457>

- 고 황유미님의 죽음을 계기로 2007. 11월 반올림이 결성된 뒤 2018년 12월 23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111명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제기함.
- 현재까지 공단과 법원으로부터 산재로 인정(확정)된 분은 모두 40명임. 근로복지공단에서 22명이,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후 행정소송을 통해 18명이 인정됨.
- 2017년, 대법원은 첨단산업에서의 희귀질환 산재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림.

3)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 및 판결

- 2008.(산보연)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악성 림프종 발병 위험이 최대 5.16배까지 높다”
- 2009.(서울대 산학협력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검출”
- 2012.(산보연)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관찰됨”
- 2016.(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하면 평균 27.8%가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 2018.(산보연)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도는 대조군의 2.57배로 유의미하게 높음”
- 2017.10.(서울고법) “삼성 반도체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와 특별감독 보고서 공개하

라”

- 2018. 2.(대전고법)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하라

4) 삼성의 거짓말 -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 삼성전자의 거짓말

- 2015.10.(보도자료)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2016. 8.(보도자료) “우리는 요구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 2016. 1.(보도자료) “반도체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모두 해결되었다.”

5)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관련 주요 경과

- 2014. 5.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합당한 보상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겠다. 중재안 나오면 따르겠다”
- 2015. 7. 제3자 조정위원회(김지형 위원장)의 조정권고안 발표.
- 2015. 9.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 설치하고 일방적 보상절차 강행.
- 2015.10. 7. 삼성, 조정회의 불참하겠다고 밝힘. 반올림,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시작
- 2015.12. 조정위, ‘재발방지대책’ 집중논의 제안하고 3주체 참여하에 1~7차 실무협의
- 2016. 1.12. 재발방지대책 합의.
조정위 발표. “재해예방대책은 합의 이루어졌으나,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보류됨.”
- 2016. 1.14. 삼성전자 발표.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해결.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
- 2018. 7. 24. 반올림과 삼성의 조정위원회 중재 합의
- 2018. 7. 25. 1,023일 간의 반올림 농성 종료
- 2018. 11. 1.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중재 판정서 발표

※ 조정위원회 중재판정서와 권고문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484>

현장실습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영 / 고 이민호 아버지(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대위)

제 아들 이민호는 1999년 11월 23일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 구좌읍에 있는 (주)제이크리에이션 생수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10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 18번째 생일을 나흘 앞둔 201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원예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보내준다면 전공과 관계없는 생수공장을 추천해주었습니다. 민호는 현장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지게차 면허를 따서 3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된 한여름 폭염 속에 민호는 동료학생 5명과 함께 공장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연장야간 근무할 것 없이 일했고, 퇴근해서 기숙사에서 쉬다가도 관리자가 부르면 다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그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잘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민호가 입사하고 1주일인가 지나서 선임으로부터 기계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실습생이라서 일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제품 적재기)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 선임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선임이 퇴사한 이후 포장라인은 민호 혼자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민호가 다루던 기계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민호가 쓰던 핸드폰에도 기계오작동이 있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기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멈췄고, 그 때마다 기계의 오류를 손을 봐야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원예과이기 때문에 기계의 매커니즘을 알지 못한 채 관리자들이 알려준대로 오류를 해결하면서 기계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같은 라인에서 3번의 사고를 당했고 결국 세 번째 사고로 인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민호는 10일을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민호가 10일을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달라고 온 몸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 1차 심정지가 왔을 때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떨쭉했던 우리 아들이 왜 심정지가 올 정도로 다쳤는지 알기 위해 달려간 공장라인은 위험천만한 곳 그 자체였습니다. 생수를 병에 담고 포장하는 라인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금속 회전체와 컨베이어벨트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들은 자동화 라인 주변에 펜스 하나 치지 않았습니다. 제품적재기 사이에 비상 정지 센서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밑에 들어갔을 때 만일을 위한 비상정지 버튼 하나 구비해두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벨이 울려 빨리 대처하게끔 해야 하는데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계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시 돌리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으로 해결이 됩니다. 말 잘 듣는 고등학생들을 기업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해주는 용역회사인 교육당국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관리 감독 할 여력이 없다면서 사고가 나야만 사업장에 간다면서 사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에 민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다시는 민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제주도에 삼다수 공장에서 똑같은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0개월 된 딸내미를 놔두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면 민호의 사고 이후 전국의 생수, 음료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자체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삼다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1월, 민호의 사고가 난 사장에 대한 공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민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민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제2의 민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장과 검사 측에서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사장이 집행유예도 벌금도 아닌 단 하루만이라도 법정 구속되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박민호 / 원진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1.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개요

원진레이온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현재 다산동)에 위치했던 큰 규모의 레이온 공장이었다. 레이온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황화탄소’가 원진레이온 직업병의 주된 원인이었다. 1983년 최초의 원진직업병 환자였던 홍원표 씨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두통, 구토, 신체 마비 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점차 늘었다.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환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해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했다.

이후 1988년 원진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원가협)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고, 당시 15세였던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직업병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1988년 원가협의 성화봉송로 점거, 1991년 故김봉환 동지의 장례투쟁이 137일간 이어졌고,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업병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노동자, 정부, 회사 3자에 의해 합의된 이 조치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1991년 후반부터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공장이 폐쇄한 이후에도 발생할 환자들의 보상과 정밀검사 등을 위함이었다. 지속적인 협의 결과, 공장 폐쇄 후에도 보상기금의 관리와 지급을 실행하는 주체로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서울녹색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원진녹색병원이 설립되었다.

직업병 검진을 받은 노동자가 2천 여 명이 넘고, 직업병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900여 명에 달했던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세계 산재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단일 공장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산재 사고였다.

2. 원진레이온 직업병 발생원인(기업과실측면)

1) 오래된 중고기계 매입

원진레이온의 전신은 흥한화학섬유(1966년)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재인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고는 이미 공장 설립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는 1965년 졸속으로 맺어진 한일협정과도 관련이 있다. 흥한화학섬유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장 건설 기간이 길어지며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였다. 당시 사장이었던 박흥식은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 측이 요청한대로 차관형태로 일본 도레이레온사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중고 기계를 매입하였다. 사실상 폐기 처리해야 하는 중고 기계를 '30억엔'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다. 총 세 번 공장명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중고 기계는 수 십 년 사용돼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그러나 원진레이온이 폐업한 뒤인 1994년 해당 노후 설비는 50억에 중국으로 팔려갔다. 일본에서 한국, 중국으로 이황화탄소 직업병이 수출된 셈이다.

2)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시설 부재

레이온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황화탄소'는 원진레이온 직업병의 주 원인이다. 이황화탄소는 1796년 독일에서 발견되어 한 때 마취제로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물질이며, 무색무취가 특징이다. 숨을 쉬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잔류하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면 정신이상의 증상을 보이거나 뇌경색, 다발성신경염,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신부전증, 부정자증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은 그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물질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을 뽑아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은 늘 습도가 높았고 이는 이황화탄소의 신체 유입을 더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자보다 작업 결과를 중요시한 공장 측에서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을 설치했을 리 만무했다. 최소한의 보호 장비인 장갑, 마스크 등의 지급도 없었으며, 12명의 중독자가 생긴 이후인 1987년이 돼서야 마스크를 지급했다.

3. 사건 책임자들의 처벌

1986년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가 원진레이온 작업환경 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노출이 높은 방사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

와 고압적인 자세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회사 역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생산성 저하,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었던 셈이다. 1988년 7월 피해자 가족들이 사장실을 점거했으나 당시 사장인 백영기는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뒤였다.

1991년 후반부터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운동이 일 년 동안 전개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직업병 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없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로 1993년 7월에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를 폐업함으로써 가해자는 사라지고 수 백 명의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해당 사고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회사 간부들은 형식적인 조사만 받았으며, 누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는 원진레이온 사고뿐만이 아니다. 재해기업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올해로 31주년이 되었다. 물론 직업병 인정 기준과 산안법은 개정되었으나 사고의 책임자에 관한 법률은 아직도 제자리다.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노동부 등 관련기관들의 대응 문제점

1988년 7월 22일 한겨레 신문에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원진레이온 사고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노동부는 그제서야 원진레이온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불과 2년 전인 1986년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가 원진레이온 측에 2만 5천 시간 무재해표장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노동부를 향한 여론은 더욱 차가웠다.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 직업병승인이 시작되면서 관할 지방관서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는 비상이 걸렸다. 특별감독이 실시됐으나 관련 전담과도 없었고, 산업위생 감독관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폐업으로 문제를 일단락하려는 자세 역시 문제였다. 회사가 폐쇄된 이후에도 중독증 환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독증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20년이 경과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직업병이 발병했을 때 책임질 주체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의 원론적 대책은 예방이다.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이 진작 이뤄졌다면 수 백 명,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산재 환자가 되는 상황까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산재 직업병 인정투쟁

1) 제 1기: 이황화탄소 직업병의 확인

- 1981년 최초로 직업병환자 보고: 아황산가스 중독으로 오보
- 1987년 4명의 원진 퇴직 노동자, 박무영과 상담 후 진정서를 통해 정밀검사를 호소하여 받음
- 1988.7.22 이황화탄소 중독자 피해보도 (한겨레신문, 안종주 기자)

<그림 2>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기사



- 1988.8.4 원진레이온 직업병 발생 진상조사반 구성
- 1988.8.8 원진레이온직업병대책위원회(위원장 이소선, 25개 단체)구성
- 1988.8.18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 및 가족협의회(원가협) 결성
- 1988. 9.9 평민당 구리지구당 사무실 점거농성
- 1988. 9.14 성화봉송로 점거 농성 계획, 회사와 합의

2) 제 2기: 직업병 검진과 김봉환씨의 죽음: 원진레이온 직업병 2차 투쟁

- 1989년 5월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 노동자 협의회(원노협)결성

<그림 3~10> 1989년 가두시위



- 1991.1.5 김봉환씨 검진 통고서 받고서 사망
- 1991.1.6일 원진레이온 직업병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결성
- 1991.5. 19 137일 간의 투쟁 끝에 장례위와 노동부, 회사 3자 합의, 21개 항목 합의

<그림 5> 1991년 5월 5일 가두시위



<그림 6> 고 김봉환 영결식



3) 제 3기: 폐업반대

- 1993.5.16 회사휴업, 이후 노조에서 출근투쟁
- 1993.6.5. 관계 장관 회의에서 폐업방침 결정, 8일 발표

<그림 7> 산업은행 앞 폐업철회 요구 집회



- 1993.6.21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원진비대위) 결성, 폐업철회 투쟁

<그림 8> 폐업 발표 후 원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1993.11.9 폐업과 관련한 노사정 3자 합의
- 1993.11.20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설립 허가

- 1994년 3월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및 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 1994.8.30 원진 직업병, 노동자 위원회(원노위)결성

4) 제 4기: 직업병 전문병원 쟁취 투쟁

- 1996.2.29. 원진공장 부지매각
- 1996.12.17. 원진레이온 앞 기금 추가출연 및 산재 전문병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
- 1997.3.14 명동성당 철야농성 돌입
- 1997.3.26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28개 단체)

<그림 9> 전문병원 설립 요구 명동성당 농성(1997)



5) 1999년~현재

- 1999년, 원진노동자건강센터 설립(구리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복지관)
- 2003년, 서울 녹색병원 개원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이한빛 PD사망

이한솔 / 고 이한빛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1. 사건 개요

2016년 10월 26일,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이한빛PD는 CJ E&M 방송부문 tvN 제작본부 기획제작 2CP 드라마 <혼술남녀> 팀에 배치되었다. 故이한빛PD는 신입 조연출로서 신입 조연출로서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준비, 데이터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드라마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절반인 8회분을 사전 촬영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방영직전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텝이 교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작 스케줄이 빠듯해지고 드라마 스텝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 되었다.

평소에 사회 및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과 활동을 이어왔던 이한빛 PD는 현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 현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제기 만으로는 개선되지 못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유서에는 비정규직을 착취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특히 외주업체를 정리하고 하는 과업을 부여 받으며 방송 업계에 대한 절망감이 커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유가족은 청년유니온 등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응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6개월이라는 조사과정을 거쳐 대응을 준비하였다. 긴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의 모욕과 무시

가 반복되었지만, 현장의 스태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확보하였고, 6개월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업계에서 최초로 촉발된 노동자의 저항이었기에, 시민과 종사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종사자의 증언과 시청자의 지지는 CJ E&M으로 하여금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기자회견 이후 두 달간의 투쟁이 이어지던 중, CJ E&M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식사과 이후 유가족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받아 방송업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 사고/직업병 발생 원인

방송노동계의 장시간 노동은 크게 피라미드형 하도급 구조와 프리랜서 계약 방식,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도제문화 등에서 비롯된다. 외주제작이라고 불리는 하도급 구조는 턴키계약이라는 변종 계약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였고, 주당 12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 스케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송 스태프들이 놓여있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는 이뿐 아니다. 기존의 메인 PD 등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제식 문화로 인해, 카메라 뒤의 사람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까지 하였다.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인격적 모욕, 도제식 문화로 인한 폭력적 업무 지시, 계약 형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갑질, 빈번히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등 역시 드라마 제작 현장의 현실이다.

드라마 <혼술남녀> 이후에도 <화유기>, <킹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등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메라 뒤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현장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너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거야”라는 협박을 듣는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거나 다음 작업에서 배제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힘든 건 잘 알지만 이렇게 짝을 수밖에 없다’, ‘예전엔 이것보다 더 심했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내부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당연하게 받아들

여진다. 장기간 폐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드라마 현장의 특성상, 내부의 자생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사건 책임자들의 처벌결과

대책위와 방송국 사이에서 책임자의 징계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개인을 향하는 구체적인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방송 노동의 문제는 업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모든 방송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한 방송국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또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았다.

상식적으로 보기에, 밤을 새워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송국이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스태프들이 한 주에 100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방송국 대표는, 범죄자다. 그럼에도 방송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모든 구조를 만들어 오면서 최소한 드라마의 현장의 비윤리적 현실을 외면하고 방기한 방송국, 정부, 산업계 전반이 방조자이자 동조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공범들이다.

메인 PD가 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고, 수많은 하청 업체를 관리하기에 책임자로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라마 사전제작이 정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인이 크기에, 방송국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망에서는 드라마 현장의 관리자인 PD나 심지어 조명팀 감독 등 도급업체의 키스태프에게까지 모든 책임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지 않으면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벌만 남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노동부 등 책임 있는 관련기관들의 대응 문제점

근로기준법과 기존의 근로감독관 같은 제도로는 방송 업계의 변화한 노동에 대응하지 못한다. 기존의 절차대로 처벌을 하자니, 드라마 제작이 끝나고 난 뒤에야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드라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틀거리에서는 같은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못하기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반복된다. 심지어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룩한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예술과 노동 사이에서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방송업계의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내부적 역량도 부족하고, 제도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한빛센터>에서도 개선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 방송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 사고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제 아들 용균이는 2018년 12월 11일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운전 및 점검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해 고작 안전교육을 3일 받고 겨우 길만 알 정도에서 그 무서운 곳을 밤에, 그것도 혼자서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온통 날리는 분진가루에다 한 사람당 2km를 점검하고 낙탄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생리현상이 나면 다시 왔던 곳을 나와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낙탄 처리하다 끼니를 놓치면 사비를 들여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한 달 반 만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집에 왔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모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차려주었는데, 아들은 조금만 먹고 먹질 못했습니다.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위가 작아져서 더는 못 먹는단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그럴까하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70년대에나 있을법한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안화력발전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컨베이어벨트 속도와 위력 위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회전체에는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는 것은 풀코드라고, 위급할 때 당겨서 기계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줄이 있는데 평소에 일할 때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세워진다고 해서 그 줄이 축 늘어져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세워야 하는데, 세웠다가 가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0분 이상 로스타임이 생겨서, 원청으로부터 갑질과 질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책임을 하

청이 부담하게 만들고, 다시 하청은 고스란히 풀코드를 당겨서 컨베이어벨트를 멈춘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못하도록 해서 퇴사 처리를 당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고가 아닙니다.

IMF 이후 몇 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정부와 합세를 해서 기업하기 좋게 비정규직이라는 구조를 만들었고, 서민들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핍박을 받고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여태껏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용균이 동료들이 몇 년 동안 '위험하니까 살면서 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스물여덟가지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는 3억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할 헤드랜턴이나 손전등도 없이 현장에서 흐릿한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용균이 사고 당일엔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공기업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입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제일 밝은 곳에서, 제일 혜택을 받고 일하기는커녕 그 지경으로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끔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이윤만 생각하고 악랄하게 시민들을 착취하고, 생사를 넘나들며 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보령지청과 대전청에 몇 번이나 찾아갔을 때마다 너무 억울해서 담당하는 부서 측에 '유가족 입장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부 입장만 늘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대전청은 정문 셔터를 내리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보령지청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탄장 자연발화를 이유로 컨베이어벨트를 일방적으로 가동하려고 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이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만 고의 누락한 4명을 포함해 10년간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습니다. 만약 한해 앞서 또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했더라면 또 우리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용균이가 죽은 후에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1,0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가 6억6,7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태껏 기업이 아무리 큰 잘못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 용균이가 죽은 뒤 특별안전결과를 발표하며, 원청 최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 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처벌받을 때는 실제로 500만원밖에 안 되는 벌금만 내고, 실행도 없이 넘어갔기에 계속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치보다 사람 목숨 값이 싸니까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을 바꿀 수 있으니까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원청이 책임 지지 않아도 되니 서민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러도 반항 못하도록 더욱 옥죄고, 그들 마음대로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게하고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전장치 없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故 김용균님 약력

- 1994. 12. 06.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 2018. 09. 17.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파워(TT04C TT05A) 배치.
- 2018. 12. 1.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피켓 사진 촬영
- 2018. 12. 11. 03:23 컨베이어벨트(CV-09E Tail Turn-Over 구간)에서 발견

스물네 살 청년 故 김용균은 빛을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고인은 전기를 만들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위력이 세고 속도가 빠른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했고, 시설물을 순찰하며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석탄(낙탄)을 치웠습니다. 탄가루·이물질을 씻어 내리는 배수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피며,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운반용 벨트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시설에 이상이 보이면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고인은 4조2교대로 밤낮 일했으며,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8만원 더 많은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았습니다.

■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 62일간의 기록

▶ 2018.12.11.

김용균은 10일 밤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3시 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용균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청 노동자이지만 국민입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규했다.

▶ 2018.12.12.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이 일하던 곳에 직접 방문했다. 그는 아들이 일했던 곳을 보고, “70년대 탄광같은 곳이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빨리 이 곳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 2018.12.17.

김용균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은 태안화력 발전소 1-8호기 작업중단을 긴급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5대 기본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2018.12.22.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인 21일부터 시민들과 도심을 행진하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김용균이 다”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했다.

▶ 2018.12.20 - 12.28.

1년 내내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가족은 국회를 지키며 ‘더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필리버스터,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이 이어졌다. 다른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산안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27일, 28년 만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28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안법 개정에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2019.01.03.

노동부 보령지청이 김용균이 일하던 태안화력 9, 10호기 재가동을 시도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청 항의방문, 농성 등으로 이를 저지했다. 4일 오전, 보령지청은 9, 10호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밝혔다.

▶ 2019.01.09.

KTX 강릉선 탈선, KT 아현지사 화재, 김용균의 죽음의 공통점은 민영화가 부른 참사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영화 중단, 근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 2019.01.11.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두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진상규명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다. 대책위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청했다.

▶ 2019.01.12.

광화문 광장에서 4차 범국민추모제와 동시에 전국 10개 지역에서 김용균 추모 촛불을 밝혔다. 김용균의 동료 20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 2019.01.15.

시민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 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었다. 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이다.

▶ 2019.01.18.

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한 장짜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정규직 전환 대책은 전무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면피책’이라고 규탄했다. 1천인의 비정규직 노동자,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동료들이 구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었다.

▶ 2019.01.19.

민주노총이 김용균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어진 5차 범국민 추모제에는 1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했다.

▶ 2019.01.22.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김용균의 시신과 함께 빈소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절박함이었다. 이 날부터 시민

대책위 대표단 6인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2019.01.24.

인권실태 조사단이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를 열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 2019.01.27.

김용균이 죽은지 49일 되는 날, 광화문광장에서 6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어머니는 제상의 딸기를 보며, 딸기를 좋아하던 아들을 떠올렸다.

▶ 2019.01.30.

설 연휴를 앞둔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3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2019.01.31.

김용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가 이어졌다. 사회원로와 조계종 스님들이 함께했다.

▶ 2019.02.05

정부·여당이 김용균 죽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적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 위는 9일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용균이 죽은지 58일만이였다.

▶ 2019.02.09.

김용균이 죽은 지 62일 만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그는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뒷자리에 묻힌다.

2부 토론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강력한 기업처벌의 필요성 및 법안의 소개 / 이상윤 집행위원장

토론 종합토론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상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누군가가 자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에이, 죽으면 어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를 죽게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살인죄로 유죄를 받고 징역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들이 있다. 바로 기업이다.

기업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반 상식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 사회운동으로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다.

초기에는 한국의 노동자 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컸다.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일과 관련되어 죽는데도 아무런 사회적 움직임이 없는 나라, 매년 OECD 국가 중 산재사고사망률 1,2위를 다투는 불명예를 가지고도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살인 행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라!’고 외치고 싶었다.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반올림’의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 투쟁,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었다.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산재사망이 원칙적으로 예방가능하다. 그런데 왜 아직 한국의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까? 아직도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사업주들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업주들이 산재예방을 위한 행동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하나는 작업장 내 노동자 참여 구조의 확장과 자기결정권 증대를 통해 노동자의 힘으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자.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는 것이다.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사업주를 포함한 고위 임원을 강력히 처벌하거나, 기업 자체에 크나큰 사회적 패널티를 부여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동시에 조사를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법원에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둘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벌칙만이 가해져 턱도 없이 낮은 벌

칙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둘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을 때, 앞선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뒤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둘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영세사업장 사업주만이 처벌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직접적'으로 사인을 제공한 이에게만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간 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작업장 안전관리자나 중간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위계 구조가 단순한 영세사업장만이 때때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음으로써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안법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형사법 위반에 따른 벌칙보다 가벼우며, 사업주들은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산재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현재 존재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엄중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같이 대기업 고위관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구조는 산재예방에 전혀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없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살인'에 버금가는 형태로 고위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벌칙을 무겁게 하는 것은 법 논리상 한계가 있고, 현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캐나다, 호주의 일부 주, 영국 등에서 이미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도 태만이나 부주의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를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얘기하면 적지 않은 법률가들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한 법률의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다른 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기업이 그릇되게 사망이나 상해를 유발했을 때 형법과 구별되는 다

른 영역의 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형법이 저평가될 수는 없다. 형법이 국가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사실은 국가의 전문성과 자원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형법 제도 내에서 피고에게 적용되는 절차상의 보호(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입증)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의 고위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처벌의 효과이다. 그것은 행위자를 고발하고, (가해자가 고통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도록 하고,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추가적인 범법 행위를 제지하고, 위반자를 갱생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법학자들이 말하는 형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러한 존재 이유가 그대로 기업의 살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된 기업 처벌에 대한 문제 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그 폭과 깊이 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특히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큰 변화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운동의 문제의식과 근본 지향이 더 넓고 깊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운동의 시작은 노동자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며, 탐욕스런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기업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등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우선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관된 질문도 우리에게 던졌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라는 ‘근대적’ 과제와 ‘기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과제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더불어 실천적 대응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더 깊고 더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생산 과정에서 혹은 생산물로 인한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 고위 임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보장의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살인 과정에 정부의 행정 책임자들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무원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이 바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 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범죄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범죄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참고자료 1

산재사망과 처벌현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성

1. 한국 산재사망의 심각성

1)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01년 이후 경제적 손실 262조 5,678억원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6	90,656	2,040	214,002	1,777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8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619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9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4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453,949	38,008	2,625,678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	
평균	90,872	2,376	164,105	분류 없어 조정 못함	

- 2001년~2016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45만3천949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함. 동기간 정부 통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62조 5,678억임. 이는 2018년 정부 총예산 429조의 61%가 지난 16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임.
- 한국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임.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함.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비해서도 1.3배 높음
- 한국은 화물운수, 건설기계, 버스, 퀵 서비스, 택배 등 다수의 위험업종 종사 노동자가 특수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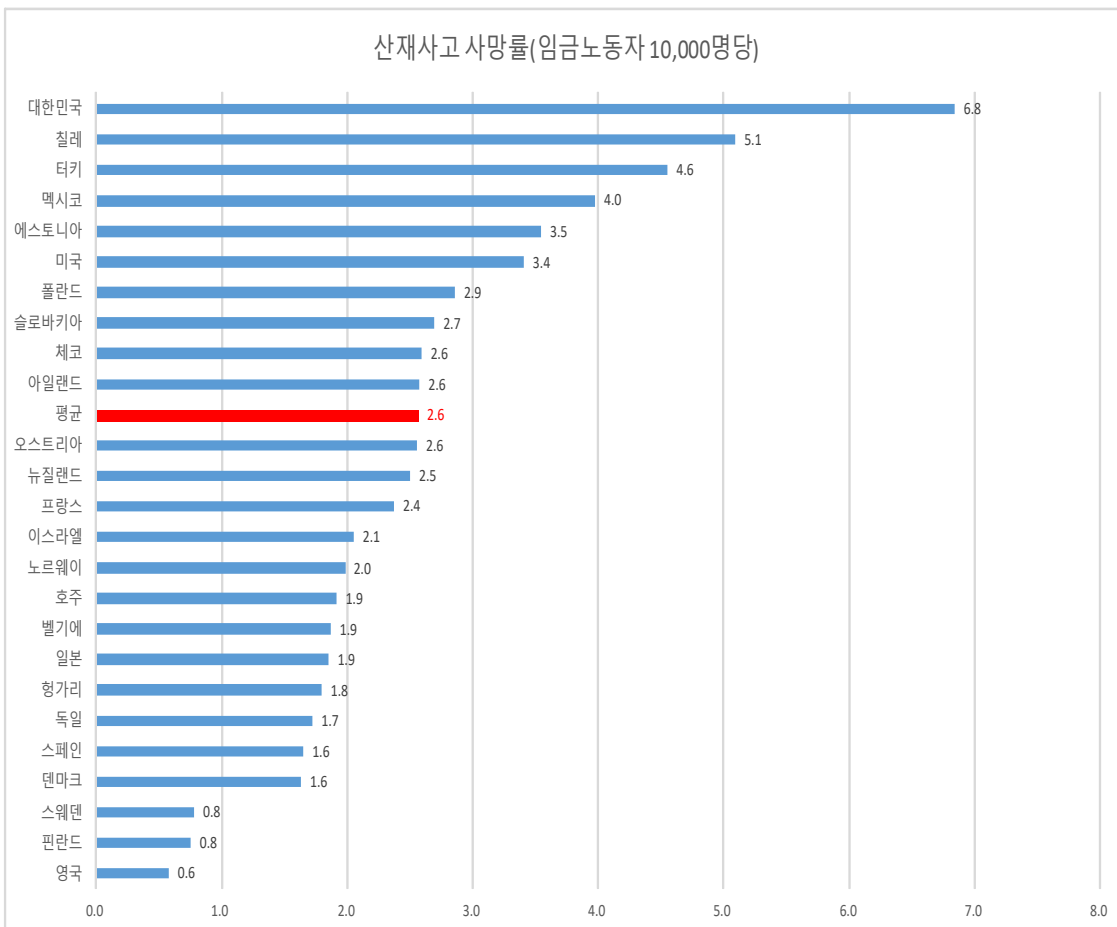
으로 250만 명의 산재가 통계에서 적용제외 되어있고, 출 퇴근 재해도 교통사고 통계로 처리됨.

- 2012년 노동부 산재통계 처리 규정 일방적 변경. <예방통계> 명목으로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고발생 1년경과 사망’ 등 통계에서 제외하여 국내외로 발표되는 산재통계가 축소되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2) 여전히 OECD 산재사망 1위

- OECD 가입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0.68로 여전히 1위임
-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높고, 영국의 11배, 일본,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비율임.



[표2 OECD 주요국가의 산재사고 사망률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13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2. 산재사망 처벌의 현황

※ 상세한 처벌 현황은 첨부 자료 참조

-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집중 제기 되고,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확산되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변화가 없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원청의 공장장 등 책임자 급은 무혐의나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고 있음
- 2015년 서울지하철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강남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결론이 내려졌고, 산재은폐를 위해 119를 돌려보냈던 충북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못함.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폭발	4명 사망, 20여명 중경상	GS건설 현장소장 벌금 1,500 / 법인 처벌 안받음 / 하청회사 벌금 200
아이코트	폭발	4명 사망, 9명 상해	대표이사 징역 2년, 집유 3년 / 안전관리책임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아이코트 법인 벌금 500
한라건설	침몰	12명 사망	현장소장 징역 2년 /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 1년 4개월 /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유 2년 / 한라건설 벌금 500 / 석정건설 벌금 1000
삼성전자	가스누출(불산)	1명 사망, 4명 상해	유독물 관리자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 벌금 300~700 /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벌금 400~700 / STI서비스 벌금 1000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는 사고의 직접성

			부정, 무죄.
현대제철	가스누출(아르곤)	5명 사망	현대제철 벌금 5000 / 부사장 징역2년 집유3년
롯데건설	추락	1명 사망	롯데건설 벌금 700 / 하청업체 벌금 1000 /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서울시	수몰	7명 사망	원청 서울시 무죄 / 시공사 현장소장 금고2년 집유3년
SK건설	붕괴	4명 사망	SK건설 현장소장 징역 8개월 집유 2년 / 하청회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집유 2년
한화케미칼	폭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케미칼 과장 금고1년 집유 2년 / 한화케미칼 대리 금고1년 집유 2년
에버코스	차량 충돌	1명 사망	지게차 운전자 금고 10개월 집유 2년 / 현장 지휘자 금고 8개월 집유 2년 / 에버코스 벌금 700 / 에버코스 대표 벌금 700
코레일	스크린도어 사고(성수역)	1명 사망	과실치사상 무혐의. 하청회사 과태료 30
코레일	스크린도어 사고(독산역)	1명 사망	하청회사 벌금 100 / 코레일 처벌x
현대삼호중공 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교통사고 처리
현대삼호중공 업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미포조선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징역 4월 집유 1년
현대중공업	화재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중공업	에어호스에 목이 줄림	1명 사망	자살로 처리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중공업	낙하물	1명 사망	해양본부장 벌금 700
현대중공업	압사	1명 사망	벌금 150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조선사업대표 벌금 300
현대중공업	압사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약식 벌금 200
현대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야간 실족	1명 사망	약식 벌금 500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약식 벌금 300

3.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 캐나다 호주는 2003년과 2004년에 영국은 2008년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 됨
- 영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후 기업 살인법 적용하여 처벌한 기업이 10여건에 이르고, 법 제정은 영국 산재사망 감소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해외의 기업처벌법 현황

국가	제정년도	법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 처벌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수상도 기소 대상)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문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 ✓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

-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책임이 없나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이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2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I. 산업재해

1.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2016년 6월 28일, 5명 하청노동자 전신화상, 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고려아연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만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공장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500만원
	온산제련소 배소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배소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000만원
하청회사	한림이엔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한림이엔지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
	현장 안전관리 직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6년 6월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9000리터 누출. 황산 누출은 배관에 든 황산(농도 95%)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

- 5명의 하청노동자가 전신화상 입고, 2명은 끝내 사망. 시설 보수 공사에 100% 하청도급업체 노동자만 고용

- 고려아연은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드레인(Drain)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 현장 안전점검 없이 안전작업허가서를 한림이엔지에 무단 발행해줬으며, 한림이엔지 역시 노동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
- 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위험업무를 도급한 원청의 책임자들은 금고 형에 그치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법인에 대한 처벌도 원청 5천만원, 하청 1천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2. 메탄을 중독 실명사고 (2016년 2월, 6명 파견노동자 실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삼성전자			
	LG전자			
3차 하청업체 (사용 사업주)	YN테크 석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80시간 사회봉사	
	덕용ENG 조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검찰 항소, 항소 기각
인력파견 업체 (파견사업주)	누리잡 (YN테크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드림아웃소싱 (BK테크에 파견) 원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600만원	
	플랜에이치알 (덕용ENG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400만원	
	대성컴퍼니 갈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200만원	
	서울솔루션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 2016년 2월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이 알려졌고,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
- 인천, 부천 공단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20대 청년노동자 5명이 실명위기. 2016년 10월 초 피해 노동자 2명이 추가 확인.

- 원청인 삼성, LG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구명 난 노동부 점검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은 지속적인 추가 피해자를 양산.

- 사업주들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1심 재판이 끝난 뒤 3명의 사용사업주(하청업체 운영자)와 5명의 파견사업주(파견업체 대표)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는 한 명도 없었음.

<CNC 가공공장 메탄올 중독 피해환자군 사례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발췌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 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에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서울메트로 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강남역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CM센터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배임	벌금 2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사장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신사업개발부 전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
-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서

올메트로 사장이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 서울시와 합의 하에 구성된 진상조사단 보고서에서는 “강남역, 구의역 등 스크린도어 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중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략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중략)...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략)...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라고 기술. 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

- 우리의 법체계상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장애는 없음. 다만, 그런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남. 무분별하게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원청이 지지 않는 현실.

4.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2015년 7월 29일, 30대 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에버코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소속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구매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상무이사, 공장장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	에버코스 구매팀장과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사	
	에버코스 안전관리업무 실무자 (안전문제 지적 받아옴)		
	에버코스 구매과장 (119신고 취소)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팀장 (피해자를 승합차에 싣음)		

- 2015. 7. 29. LG생활건강의 하청업체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에버코스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5분간 끌려가는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측의 산재 은폐와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의 침묵으로 그냥 평범한 사고로 묻힐 뻔 했으나, 8. 18. JTBC “뉴스룸” 에서 현장 CCTV를 공개하고 “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알려짐

- 8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지난 3년간 에버코스가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29건에 달하는 산재 은폐 드러남. 이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

반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고, 과태료만 1억7천5백만원을 부과.

- 2015년 9월 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소속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 10명이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지게차로 고인을 충격한 점과, 큰 부상을 당한 고인을 1시간 이상 방치한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산재은폐 및 증거인멸의 시도로 봄.

-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2015년 9월 30일 에버코스 전태영 대표를 구속. 2016년 5월, 검찰은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통보. 전태영 대표이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했고,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죄, 살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에버코스 범인의 경우에는 위 각 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

- 1심 판결에서도 지게차 운전자에게만 금고가 선고 되었을 뿐, 대표이사과 범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전부.

5. 광주 남영전구 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 (2015년 4월, 21명 급성 수은중독)

	직책	죄명	1심	2심/최종심
원청회사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모그룹 기술관리실 부장-안전문제 기술검토 차 파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폐기물관리법 위반(무죄)	검사 항소 기각
하청회사	하청업체 실운영자, 현장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	--	-------------------------------	--	--

- 2015. 3. 23.부터 2015. 4. 7.까지 진행된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철거업체의 하청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
-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1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 14명이 산업재해인정을 요구.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그중 12명의 신청을 승인. 2명은 사업자로 분류 돼 산재 불승인 처분.
-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

6. 한화 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망 사건 (2015년 7월 3일, 하청노동자 6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항소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500백만원 징역 10월,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공장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2년) 벌금 5백만원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생산담당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 방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 방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500백만원	

	공무2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상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회사	하청업체 대표 - 공해방지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업체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 2015. 7. 3. 오전 9시16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안 폐수처리장의 폐수저장조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
-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사망
- 검찰 수사결과 △ 한화케미칼은 폐수집수조 내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으며, △ 하청업체 역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
- 법원 : 원청업체에 벌금 1천5백만 원, 기소된 다수에게 집행유예 정도만 선고

7.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향소심	최종심
원청 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 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사용)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 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 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 법원의 판단대로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 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체인 대림산업은 1, 2심에서 폭발사고 관련 위반 사실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겨우 대법원에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수억 원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노동청의 특별감독(1000건이 넘는 위반)에서 드러난 안전상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에 선고 받았던 벌금 3천만 원에 덧붙여 벌금 5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었다.

- 다른 한편으로 위반죄명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것이다. 이 위반죄는 중대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폭발위험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미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이다. 중대한 사망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았다.1)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8.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1)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 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 되었다.

-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며, 현대제철 법인과 우유철·박승하 사장(복수 대표이사)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 검찰은 근로보수작업 총책임자인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및 직원 8명과 하도급업체 한국내화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 3명 등 총 12명을 기소했으나,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 법원은 현대제철에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부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산소측정기를 지급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라면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법원이 원청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만 부과하는 등 기업에 관용을 베풀었다.

9.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박, 이씨에 대해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1.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	------	-----------	------------------------------------

12.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13.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²⁾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I 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의 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법조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주)코리아2000은 24억의 냉동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억 이상 공사는 원청 현장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를 위반하였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소속 근로자, 용역업체에서 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등 각종 재해시 대처 방안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명이 사망한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주)코리아2000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화재사고 관련자 10여명이 벌금 1,000만원 벌금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14.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5.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II.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징역 6년,	향소 기각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대상자 (당시 인천청 직급)	비위유형 (사유 구체)	감사원 처분요구	징계위원회 결정	최종 징계결과
박OO (주부관)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중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 2012.8.14 청해진해운의 선박 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인가기한을 연장 승인 - 2013. 3. 14. 사업계획변경시 2011년도 조건부 인가 당시 자료를 근거로 계획변경을 결 단하여 운송수입률이 관련기 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인가	정직	정직2월 (2015.3.6)	정직2월(2015.3.13) →감봉3월로 감경 (소청심사)
이OO (행정사무관)		정직	정직1월 (2015.3.6)	정직1월(2015.3.13.) →소청심사 안함
김OO (선원해사안전 과장)		정직	정직1월 (2015.4.10)	정직1월(2015.4.17) →감봉2월로 감경 (소청심사)
김OO (청장, 현재 국토부)		정직	감봉3월 (2015.4.10)	감봉3월(2015.4.24) →감봉1월로 감경 (소청심사)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감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변동이유 (감경내용)
이OO 팀장 책임검사원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 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조OO 선임 수석검사원	선령 연장검사 업무 태만	부지정	경고 (2014.11.11)	포상감경 (견책→경고)
전OO 선임검사원	세월호 별도조건검사 업무태만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전00 주임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초 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 검	징계	2015.7.7. 면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선박안 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운 항관리 직제와 정원 폐지)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단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단>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단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 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향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사고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25명이었다. 삼풍그룹 회장, 삼풍백화점 회장, 삼풍백화점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7년 6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 고사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을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죄에 비하면 처벌이 낮은 편이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증거인멸혐의였다. 물청소는 유류품 및 실종자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루어져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드러난 힘의 차이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항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항소포기	항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항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항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항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항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항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재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 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관련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이 중 11명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명의 형량을 줄여줬다. 1심에서 금고 2년 4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이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공기 단축뿐 아니라 폭설에 대한 관리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고 밝혔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
이 향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
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1.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7중 추돌 사고(2017년 7월 9일 2명 사망, 16명 부상)

-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선 양재나들목 근처에서 빗길 졸음운
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 원인 : 회사의 근무체계에 의한 졸음운전. 2016년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그 이유는 오산교통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기사를 충원

- 수사경과 : 7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사무실 자료 압수수색. 7월 13일 (국토교통부가 7대로 운영을 승인했던) M5532번을 5대만 갖고 운행했다는 사실과, 기사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떠넘겼다는 의혹, 그리고 회사 소속 정비사 4명이 정비사 자격증이 없다는 혐의. 7월 27일 대표 최병현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 8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대표 최병현씨와 아들이자 전무인 최모(33)씨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공갈,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사들에게 떠넘긴 혐의(공갈)도 적용. 운전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갈취

- 검찰 : 버스 사고로 인해 경영진이 구속 된 전례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반려. 운전자는 구속

- 법원 : 운전자는 금고 1년 선고(2017.11.22.) - 사고지점은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함

피고인은 광역버스 기사로 이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2~3회 반복하고 그 다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일과를 반복해 왔다. 보통 하루 5~6회 왕복 운영을 하였으며 한번 왕복에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하루 6회 왕복 운전하는 경우 운전하는 시간만 15시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격무 속에서 운전업무를 해 온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형태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이틀이나 하루 일하고 하루의 휴식이 주어졌다. 비록 과중한 업무라 하더라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라면 위와 같은 대형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론채 목숨을 잃거나 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교통 선진국들에 비해 운전 중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점차 제도 개선이나 국민 의식 개선을 통해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정도나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3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원료나 제조물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